

##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당자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li> <li>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li> <li>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 ·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li> <li>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ol> </li> <li>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li> <li>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ol>
▶ 목차	

<b>해당자</b>	<p>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p> <p>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b>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한 없음</li> </ul>
<b>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b>	<p><b>1.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b></p> <p>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li> </ul> <p style="background-color: #e0e0ff; padding: 5px; margin-top: 10px;"><b>첨부서류</b></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ff; margin-top: 5px;">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div>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 목차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5)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6)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 고용 입증서류(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 2.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9호)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필수항목 합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합	국내 체류 기간
30점 이상	5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20~29점	100점 이상	"
10~19점	100점 이상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별 내용과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 필수항목 : 총 245점

단일 항목	구 분		점수
	기본사항	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저명 인사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
		노벨상, 폴리처상, 서울평화상, 과테상 등 수상자	40
세계적 연구 실적 (30)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확장판),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15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b>세계적 스포츠 스타 (30)</b>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20
<b>세계적 대학 강의 경력 (30)</b>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3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15
<b>세계적 기업 근무경 력 (30)</b>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5
<b>대기업 근무 경력 (25)</b>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5
<b>지식 재산권 보유 (25)</b>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 발명권자는 대상 아님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
		특허권 1개 보유	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15
<b>우수 재능 보유 (25)</b>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15
		국제적 권리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10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 항목	구분별 점수			
국내 연간 소득 (30)	전년도 일인당 GNI 4배 이상	전년도 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	전년도 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	전년도 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30	20	10	5
국내자산 (30)	10억원 이상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7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미만
	30	20	10	5
학력 (20)	박사	석사	학사	
	20	15	10	
기본소양 (15)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종합평가만 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15	10	8	5
가점 (110)	국민 고용	경영 경력	추천서	납세 실적
	5~30	5~30	20	10
	사회 봉사	국내 유학	일·학습연계유학	
	5, 10	5	5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 (국내 학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국외 학위) 국내 고등교육법상에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 중인 국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고용된 국민수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26명 이상
국민고용 가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

본인 자본금	1~5억	6~10억	11~15억	16~20억	21~25억	26억 이상
경영경력 가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 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0.1.1. ~ 2021.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으로, 해당 연도 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되며, 연도별 총 합산 점수는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http://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www.vms.or.kr](http://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 첨부서류

-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 결혼이민(F-6)

## 활동범위 및 해당자

	<p>■ 국민의 배우자</p> <p>■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다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p> <p>■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자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th></tr> </thead> <tbody> <tr> <td>F-6-1 (국민의 배우자)</td><td>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td></tr> <tr> <td>F-6-2 (자녀양육)</td><td>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td></tr> <tr> <td>F-6-3 (혼인단절)</td><td>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자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td></tr> </tbody> </table>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자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자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p><b>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b></p> <p>(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p> <p>※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p> <p><b>&lt;제출 서류&gt;</b></p>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b>사증</b>	<p style="text-align: center;"><b>※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b></p> <h3 style="text-align: center;">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h3>																																								
<b>1. 기본서류</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류종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h style="text-align: center;">발급받는 곳</th> <th style="text-align: center;">체크리스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td>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여권용 사진 1매</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에 부착</td> <td></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td> <td></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신청인 여권 사본 1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적사항면 복사</td> <td></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비자 신청 수수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예)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td> <td></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체크리스트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input type="checkbox"/>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input type="checkbox"/>	1-5	비자 신청 수수료	(예)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			<input type="checkbox"/>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체크리스트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input type="checkbox"/>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input type="checkbox"/>																																				
1-5	비자 신청 수수료	(예)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			<input type="checkbox"/>																																				
작성하는 서류 (기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외국인 배우자 초청장</td> <td colspan="2"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신원보증서</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7	신원보증서	<input type="checkbox"/>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input type="checkbox"/>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7	신원보증서				<input type="checkbox"/>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d>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적사항면 복사</td> <td></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0</td> <td>기본증명서(상세)</td> <td colspan="2"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1</td> <td>혼인관계증명서(상세)</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2</td> <td>기족관계증명서(상세)</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3</td> <td>주민등록등본 원본</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4</td> <td>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외국인 관서</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5</td> <td>건강진단서 원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아래 #2 참조,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병원/보건소</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input type="checkbox"/>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input type="checkbox"/>	1-12	기족관계증명서(상세)	<input type="checkbox"/>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input type="checkbox"/>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출입국·외국인 관서	<input type="checkbox"/>	1-15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2 참조,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병원/보건소	<input type="checkbox"/>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input type="checkbox"/>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input type="checkbox"/>																																				
1-12	기족관계증명서(상세)				<input type="checkbox"/>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input type="checkbox"/>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출입국·외국인 관서	<input type="checkbox"/>																																				
1-15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2 참조,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병원/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6</td> <td>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선택사항(본국에서의 종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급기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7</td> <td>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급기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8</td> <td>건강진단서 원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아래 #4 참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병원</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9</td> <td>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td> <td colspan="2"></td> <td></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1-16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종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발급기관)	<input type="checkbox"/>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		(발급기관)	<input type="checkbox"/>	1-18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input type="checkbox"/>	1-19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1-16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종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발급기관)	<input type="checkbox"/>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		(발급기관)	<input type="checkbox"/>																																				
1-18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input type="checkbox"/>																																				
1-19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p>*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li> <li>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li> <li>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ul> <p>*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p>																																									

▶ 목차

공관장 제량으로

<b>발급할 수 있는 사증</b>	<p>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u>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u>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p> <p>*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u>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u></p> <p>*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u>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u>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u>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u>(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p>																																																											
<p><b>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b></p> <p>※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 <p>※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류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h style="text-align: center;">체크리스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통 필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금액증명 원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정보조회서 1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근로소득 활용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소득 원천징수부</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직증명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증 사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증 사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9</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소득 활용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 입증서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1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활용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금, 보험, 증권, 채권,</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11</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12</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입증 서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p>*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p> <p>*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리스트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input type="checkbox"/>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input type="checkbox"/>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2-4	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input type="checkbox"/>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input type="checkbox"/>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input type="checkbox"/>	2-11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input type="checkbox"/>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input type="checkbox"/>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리스트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input type="checkbox"/>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input type="checkbox"/>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2-4		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input type="checkbox"/>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input type="checkbox"/>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input type="checkbox"/>																																																								
2-11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input type="checkbox"/>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input type="checkbox"/>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 발급할 수 있는 시증

-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3-1	한국어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120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input type="checkbox"/>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input type="checkbox"/>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input type="checkbox"/>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input type="checkbox"/>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input type="checkbox"/>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input type="checkbox"/>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input type="checkbox"/>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리스트
4-1	자기인 경우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리스트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input type="checkbox"/>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증명서 등록증 사본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사본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사본		<input type="checkbox"/>
5-3	자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주거요건	자기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input type="checkbox"/>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포함)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input type="checkbox"/>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input type="checkbox"/>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分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input type="checkbox"/>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체크 리스트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input type="checkbox"/>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input type="checkbox"/>

	1-5	비자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7	신원보증서			<input type="checkbox"/>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input type="checkbox"/>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input type="checkbox"/>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input type="checkbox"/>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input type="checkbox"/>
1-14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1 참조 면제 대상자(#2 참조)는 제출 불필요	병원/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15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	(발급기관)	<input type="checkbox"/>
1-17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input type="checkbox"/>
1-18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p>*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체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u>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u> 것이어야 합니다.</p> <p>*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시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li> <li>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li> <li>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li> </ul> <p>*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u>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u></p> <p>*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u>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u>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u>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u>(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p>				
<p>&lt;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gt;</p> <p>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⑳ 타지키스탄 ㉑ 우크라이나 ㉒ 아제르바이잔 ㉓ 벨라루스 ㉔ 몰도바공화국 ㉕ 나이지리아 ㉖ 남아프리카공화국 ㉗ 에티오피아 ㉘ 콩고민주공화국 ㉙ 케냐 ㉚ 모잠비크 ㉛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㉞ 파푸아뉴기니</p>				

##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리스트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input type="checkbox"/>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input type="checkbox"/>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2-4		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input type="checkbox"/>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input type="checkbox"/>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input type="checkbox"/>
2-11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input type="checkbox"/>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input type="checkbox"/>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b>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b>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3-1	한국어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120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input type="checkbox"/>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input type="checkbox"/>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input type="checkbox"/>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input type="checkbox"/>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input type="checkbox"/>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input type="checkbox"/>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input type="checkbox"/>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input type="checkbox"/>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기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b>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4-1	자기인 경우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리스트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input type="checkbox"/>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증명서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사본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사본		<input type="checkbox"/>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input type="checkbox"/>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input type="checkbox"/>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input type="checkbox"/>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分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input type="checkbox"/>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input type="checkbox"/>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다.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 라.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2.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p>☞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고지</p> <p><b>첨부서류</b></p> <p>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 징구 가능</u></p>
<b>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b>	<p>☞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p>
<b>참고사항</b>	<p>Q.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p> <p>A.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u>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함.</u>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됨</p>
<b>▶ 목차</b>	